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월 28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8호

### 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

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명 ‘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관리 운영 지침’을  
‘스포츠소속 단시간근로자 관리 운영 지침’으로 제명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‘강사’를 삭제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제1항 중 ‘강사’를 삭제한다.

제3조(정의)를 제3조(용어의 정의)로 수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“채용권자”라 함은 단시간근로자의 채용·복무·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표이사를 말한다.

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“사용부서”란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.
1. 재단의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2.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
  3.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

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용부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채용·퇴직 등 관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

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.

- ③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표1의 자격요건에 따라 재단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시청 홈페이지, 일간신문, 온라인 취업사이트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1. 채용예정 직급, 응시 자격, 선발 예정 인원, 시험의 방법·시기·장소
  2.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
  3.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
  4.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
  5.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

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채용권자는 전형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접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형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채용권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별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 등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.

제4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⑥ 채용 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[별지1]의 서식에 따라 채용자격요건 기준의 적격 여부를 심사 한다.

2. 채용자격요건 기준에 적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,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다.
3. 면접심사는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을 결정한다.
4. 최종합격자 임용 결격 사유 발생 및 최종합격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불(不)임용 시 차 순위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4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(서류전형포함)시 채용규모,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할 수 있다.

제4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⑧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, 동일한 채용시험(서류전형 및 면접시험)에서는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.
  1.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
  2.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

제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⑨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  1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  2.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
  3. 기타 자격, 면허증사본(해당자) 등 채용 절차상 필요한 서류

제6조(업무의 범위) ①항 중 ‘강사’ 를 삭제한다.

제7조(스포츠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보수)를 제7조(스포츠 단시간근로자 보수)로 수정한다.

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제4항 중 ‘강사’ 를 삭제한다.

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전협의 후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.

제8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시간근로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, 프로그램 운영상 특이(문제점) 사항이 없을 경우 채용 공고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10조 제2항 중 ‘단시간근로자 및 강사’ 를 ‘단시간근로자의 운영·관리’ 로 한다.

[별표1] ‘스포츠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채용 자격 요건 기준표’ 를 ‘스포츠 단시간 근로자 채용 자격 요건 기준표’ 로 수정 하고 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단시간근로자 스포츠과학센터측정 보조 직종에서 우대사항 중 ‘선수 출신자’ 를 삭제한다.
- 단시간근로자 ‘스포츠연구소 연계프로그램 강습’ 직종과 그 이하 내용을 삭제한다.
- 단시간근로자 수영강습 직종에서 우대사항 중 ‘특수체육전공자 우대’ 를 삭제한다.
- 단시간근로자 수영장안전요원 직종에서 우대사항 중 ‘재학생(체육전공자)’ 를 삭제한다.
- 구분의 ‘강사’ 와 그 이하 내용을 삭제한다.

[별표2] ‘스포츠 단시간근로자 및 강사 보수표’ 를 ‘스포츠 단시간근로자 보수표’ 로 수정하고 ‘강사료’ 를 ‘보수(원)’ 으로 하며 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‘아쿠아로빅 강사’, ‘생활체육 강사’, ‘스피닝 강사’, ‘아이스링크강사’, ‘연구소 프로그램 주강사’ 를 삭제하고 그 이하 내용도 삭제한다.
- 탈의실 보수를 ‘10,600’ 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내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